

기금운용심의회 운영 규정

제정 : 2020. 11. 06

개정 : 2022. 03. 04

담당자 : 기획실 (02-950-5424)

----- 목 차 -----

제1조(목적)	제2조(정의)	제3조(적용)	제4조(사용의 제한)
제5조(관리부서)	제6조(구성)	제7조(도안)	제8조(용도)
제9조(교기의 게시)	제10조(종류)		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사립학교법」 제32조의3,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와6항에 의거하여 한국성서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의 기금운용을 위한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
2.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
3. 그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본회는 위원장 1명, 교원 2명이상, 직원 2명이상, 재학생 2명이상, 외부전문가(회계 관련) 1명 이상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.

② 당연직위원은 총장, 부총장, 전략기획실장, 일립행정본부장으로 한다.

③ 위촉위원은 교원, 직원, 학생, 외부 전문가,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⑤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.

⑥ 본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기획팀장으로 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⑧ 본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.

제4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, 연임 및 중임이 가능하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 임기간으로 한다.

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5조(회의의 소집과 의결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 회계연도 내 반드시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소위원회)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7조(운영규정의 개정) 운영 규정은 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.

제9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의 기금운용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기금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.